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려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3) 흡입했을 때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토하게 하지 마시오.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4) 먹었을 때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토하게 하지 마시오.
5)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1)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2)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3)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대부분 물보다 가벼우니 주의하시오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1)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흄 · 가스 · 미스트 · 증기 · 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오염 지역을 경리하시오.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누출물을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3)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흡수된 물질을 수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 방법

1) 안전취급요령

폭발 방지용 전기 · 환기 · 조명 · 장비를 사용하시오.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흄 · 가스 · 미스트 · 증기 · 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목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저지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중,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하시오

2) 안전한 저장방법

열 · 스파크 · 화염 · 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50 ppm STEL 75 ppm

ACGIH 규정 TWA 20 ppm STEL 75 ppm

생물학적 노출기준 1mg/L (소변 중 메틸 이소부틸 케톤, 샘플링 : 작업 종료 후)

2)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운전시 흡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3)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방독마스크 이상의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 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액체

색상 무색

냄새 특유의 냄새

냄새역치 0.1 ppm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84 °C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16.5 °C

인화점 14 °C (c.c.)

증발속도 5.6 (에테르=1)

인화성(고체, 기체) 해당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7.5 / 1.4 %
증기압	2.1 kPa (20°C)
용해도	1.91 g/100mL (20°C)
증기밀도	3.5 (공기=1)
비중	0.8 (물=1)
n-옥탄올/물분배계수	1.38
자연발화온도	460 °C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0.61 cP (20°C)
분자량	100.16

10. 안정성 및 반응성

1)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2) 피해야 할 조건

열 · 스파크 · 화염 · 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3)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4)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탄소산화물 등의 자극성/부식성 흄

11. 독성에 관한 정보

1) 가능성인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호흡기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경구 : 자료없음

눈, 피부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2)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2080 mg/kg Rat

경피

LD50 > 2000mg/kg Rabbit

흡입

증기 LC50 11.6 mg/ l 4h Rat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 결과,

자극성이 관찰되지 않음 OECD TG 404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심한 눈 손상/자극성 시험결과 약한

자극각막지수 0.08, 흥채 0, 충혈 0.80이 관찰됨 OECD TG 405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피부과민성 시험 결과, 과민성을 일으키지 않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2
IARC	Group 2B
OSHA	자료없음
ACGIH	A3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테리아복귀돌연변이시험 결과OECD TG 476, 포유류 염색체 이상시험 결과OECD TG 473, 대사활성계 부재시 음성, 생체 내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결과 음성 OECD TG 474, GLP 랫드를 이용한 발달독성/최기형성 시험결과 신장 무게 증가, 태아 체중 감소, 골화지연 등이 관찰되었으나 기형에 대한 증거는 관찰되지 않음(NOAEL 1 000 ppm) (OECD Guideline 414, GLP)
생식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사람에서 기도 · 점막 자극성, 두통 · 현기증 · 구토 등의 마취 작용을 수반하는 중추 신경 증상이 나타남. 동물 실험에서 마취 작용이 나타남.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90일 반복경구독성시험OECD TG408 결과 신장무게 증가 NOAEL 250 mg/kg bw/day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생태독성

어류	LD50 672 mg/ l 48 hr Brachydanio rerio(OECD Guideline 203, GLP)
갑각류	EC50 1550 mg/ l 24 hr Daphnia magna(OECD TG 202, GLP)
조류	EC50 >146 mg/ l 7 day 기타(Blue algae, OECD221)

2)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log Kow 1.31
분해성	자료없음

3)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83 % 28 day (OECD TG 301, GLP)

4)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5)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 1)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2)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 유엔번호(UN No.)	1245
2) 적정선적명	메틸이소부틸케톤(METHYL ISOBUTYL KETONE)
3)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4) 용기 등급	II
5) 해양오염물질	해당없음
6)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E
유출시 비상조치	S-D

15. 법적 규제 현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 ℥ 지정폐기물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2267.995 kg 5000 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F; R11 Xn; R20 Xi; R36/37 R66
EU 분류정보(위험문구)	R11, R20, R36/37, R66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2, S9, S16, S29

16. 기타 참고자료

- 1) 자료의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상품대사전 - 가나다화학,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소방방재청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2) 최초 작성일자 : 1996. 05. 02.

3)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제공된 정보는 제품에 대한 현상태의 지식과 경험에 따른 것으로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는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명세에 따르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특수한 목적에 대한 적합성, 다른 물질과의 혼용, 상업적 적용 또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기술적, 법적 책임도 질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사용자는 제품, 개인 위생, 인류 복지와 환경 보호에 관한 모든 법률, 행정, 규제 절차를 준수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